

2022. 11. 18. ~ 12. 16.

- 29일간 -

제34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처리결과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31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06.	원안가결
2313	장성군의회 의원의회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06.	원안가결
2315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2.12.06.	원안가결
2316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12.06.	수정가결
2317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022.12.06.	원안가결
2318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2.06.	수정가결
2319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2.06.	수정가결
2320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2.12.06.	원안가결
2321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2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3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4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2.12.06.	수정가결
2325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2.12.06.	원안가결
2326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7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8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29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정비) 계속비 승인안	2022.12.06.	원안가결
2330	2023년도 예산안	2022.12.16.	수정가결
233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12.16.	원안가결
233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자위)	2022.12.06.	원안가결
233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건위)	2022.12.06.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나철원 의원(의회사무과)
- 제출일자 : 2022. 11. 9.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장성군의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활동비 예산 지원근거 명확화. (안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 오원석 의원(의회사무과)
- 제출일자 : 2022. 11. 9.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심의결과를 장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반영하고, 그 밖에 근거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안 제명 띄어쓰기 정비
 - (기존) 의원의정활동비 → (개정) 의원 의정활동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2. 1. 13.)에 따른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2조)
- 여비에 관한 사항은 국내·외 여비로 구분하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개정)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개정(안 제2조제3항제2호 별표1)
 - 2023년 ~ 2026년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금액산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장성군 조직개편 추진으로 자치법규 내용 중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부서별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 내 부서 및 부서장 명칭, 팀명 현행화 (안 제1조 ~ 안 제75조)

(단위 : 건)

부서	계	기획	일자리	자치행정국							건설산업국							보건의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사업	말기돌봄	평생교육부
				총무	민원	문화	주민	가족	환경	세무	재난	건설	도시	산림	교통	축산	유통		지원	기술			
건설국	75	6	11	4	1	4	1	10	2	2	8	0	1	1	4	3	1	2	4	1	3	3	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 10.) 및 시행령(2022. 9.)이 제정됨에 따라
- 2023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금의 관리·운용, 사용 목적(안 제8조 ~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제22조)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안 제23조 ~ 제24조)

○ 토론요지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9조 제4항에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하자는 의견 제출

○ 수정안의 요지

- 제9조제4항에 “군수는 기부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추가 삽입.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③ (생략)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③ (현행과 같음) <u>④군수는 기부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5.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안 제7조~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개정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 구성 수정(안 제4조의2제3항)
 - (기존)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개정) 심의회 민간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2제4항)
 - 상위법령에서 민간위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 규정 삭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 (신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 *취득의 경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
 - *처분의 경우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또는 1건당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
- 상위법령 개정관련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 (기존) 사용·수익허가 → (개정) 사용허가
 - (기존) 실경작자 → (개정) 농업인
 -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 (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 토론요지 :

-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1회 연임규정을 추가 수정하자는 의견 제출.

○ 수정안의 요지

- 제4조의2제4항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추가 수정.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한</u> <u>다.</u>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④----- <u>하</u> <u>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1-1. 제안이유

- 2016년 축령산 추암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을 통해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함.

1-2. 주요내용

- 사업명: 축령산 추암지구 토지 매입
- 위치: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4-68번지 등 65필지
- 매입규모 : 65필지 453,106㎡(137,065평)
- 소요예산: 5,095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추정가격	비고
합 계		65	453,106	5,095,000	
토지 취득	공유 지분	8	245,641	2,532,255	
	개인 소유	57	207,465	2,562,745	

2.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2-1. 제안이유

- 잔디예지물 처리 및 부엽토 생산을 통한 환경문제 및 민원을 해결코자 함.

2-2. 주요내용

- 사업명 : 잔디예지물 가공·처리장 토지 매입
- 위치 :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661-4
- 매입규모 : 1필지 18,218㎡(5,510평)
- 소요예산 : 1,093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위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토지	삼서면 석마리 661-4	18,218 (5,510평)	학교	1,093,000	(구)삼서 남초등학교

3.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3-1. 제안이유

-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유희공간에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2. 주요내용

- 사업명: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2(오룡동 949-5)
- 사업규모: 건물 증축 660㎡(200평)
- 사업기간: 2022. 10 ~ 2023. 12.
- 소요예산: 1,87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위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660	1,870,000	
건물증축	광주 광산구 오룡동 945-5	660	1,870,000	로컬푸드 직매장 2층 증축

4.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4-1. 제안이유

- 노후화된 보건소 신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2. 주요내용

- 사 업 명: 장성군 보건소 신축 이전
- 위 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7-1외 5필지
- 사업규모: 부지 10,205㎡(3,087평) / 연면적 6,051㎡(1,831평)
- 소요예산: 4,709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산위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토지	영천리 1487-1 외 5필지	10,205	답	4,709,000	

5.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5-1. 제안이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지원
 하고자 함.

5-2. 주요내용

- 사 업 명: 장성군 직업재활시설 신축
- 위 치: 장성읍 영천리 1449-1
- 사업규모: 부지 3,273㎡(990평) / 연면적 528㎡(160평)
- 소요예산: 3,70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계					3,7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3,273	답	2,000,000	
	건물신축	1동	528	-	1,700,000	

6.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6-1. 제안이유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기능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함.

6-2. 주요내용

- 사업명: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 위치: 장성읍 영천리 1449-2
- 사업규모 : 부지 1,947m²(589평) / 연면적 396m²(120평)
- 소요예산 : 2,700백만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지목	추정가격	비고
계					2,700,000	
취득	토지매입	1필지	1,947	답	1,200,000	
	건물신축	1동	396	-	1,500,000	

○ 토론요지

- 2023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건중 2건인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건,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토지매입에 한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는 의견 제출.

○ 수정안의 요지

- 2023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중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신축 건,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건 등 2건은 토지매입에 한하여 조건부 승인하는 일부 수정가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8.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함.

○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취득세

-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9.

○ 제안이유

-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7년도 지방

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정비사업 보상협의 지연으로 금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5,868백만원(국비 4,108, 군비 1,76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2017~2022(6년) / 변경 2017~2023(7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5,868	
2017년	474	• 기본계획 용역, 지역역량강화
2018년	714	• 실시설계 용역, 지역역량강화
2019년	1,931	• 기본계획 승인, 지역역량강화
2020년	1,753	• 홍보관(청운1) 및 커뮤니티센터(청운3) 건립, 지역역량강화
2021년	996	• 실버케어문화관(청운2) 건립,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2022년	-	• 실버케어문화관(청운2) 건립,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2023년	-	• 도로정비,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9.

○ 제안이유

-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 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18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센터 및 소통광장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 이므로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8,000백만원(국비 5,600, 군비 2,400) ⇒ 변경없음
- 계속비기간 : 당초 2018~2022(5년) / 변경 2018~2023(6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8,000	
2018년	400	• 기본계획 용역
2019년	1,015	• 기본계획 승인
2020년	1,567	• 실시설계 용역
2021년	3,229	• 소통광장, 안전마을길
2022년	1,789	• 문화센터, 소통광장, 지역역량강화
2023년	-	• 문화센터, 소통광장, 지역역량강화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제출일자 : 2022. 11. 9.

○ 제안이유

- 월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합류식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불명수 유입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정적인 처리장 운영 및 방류수역 수질 보존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3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21년 10월 환경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는 14,456백만원에서 15,935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2022년에서 2020년~2024년까지로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14,456백만원 【재원 - 국비50%+군비 50%】
 변경 15,935백만원 【재원 - 국비 45%+군비 55%】
- 계속사업비 : 당초 14,456백만원 【국비 7,228.0, 군비 7,228.0】
 변경 15,935백만원 【국비 7,181.5, 군비 8,753.5】 (증1,479)
- 사업기간 : 당초 2020년 ~ 2022년
 변경 2020년 ~ 2024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15,935	
2020년	7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년	1,706	• 설계경제성 검토용역, 건설기술심의, 행정협의
2022년	3,537	• 노후 하수관로 정비(L=5.1km)
2023년	3,865	• 노후 하수관로 정비(L=7.2km)
2024년	6,127	• 노후 하수관로 정비 L-=15.3km)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소장)

○ 제출일자 : 2022. 11. 10.

○ 제안이유

-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도모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과 축하로 장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금액(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함
- 지원대상(안 제4조)
 -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지원자격 및 절차(안 제5조~제6조)
 -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토론요지

- 제3조제1항에서 지원금액을 정함에 있어 군수의 권한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라는 사항을 삭제 수정하는 의견제출.

○ 수정안의 요지

- 제3조제1항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 의결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금액)①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원금액) ① ----- ----- ----- 있다.

13.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제출일자 : 2022. 11. 14.

○ 제안이유

2023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서명	출연기관	2023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6개 기관	3,285,319		
일자리경제실	전남신용보증재단	51,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등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총 무 과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의식 고취운동 등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5,015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농업유통과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5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총괄 운영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센터	(재)장성장학회	2,599,304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인재육성 및 기부문화선도 (교육책자 판매대금-7,000)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5.

○ 제안이유

- 평림천의 주요염원 제거, 어류 및 야생동물 섭식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2020년 3월 전라남도의 생태하천 복원심의에 따라 총사업비가 20,000백만원에서 20,500백만원으로 조정되고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당초 : 20,000백만원 【재원 - 국비 11%+도비 39%+군비 50%】
- 변경 : 20,500백만원 【재원 - 국비 11%+도비 39%+군비 50%】

- 계속사업비

- 당초 : 20,000백만원(국비 23.5억, 도비 76.5억, 군비 100억)
- 변경 : 20,500백만원(국비 23.5억, 도비 76.5억, 군비 105억)

- 계속비기간

- 당초 : 2018 ~ 2022(5년) · 변경 : 2018 ~ 2023(6년)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0,500	
2018년	7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년	4,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호안정비
2020년	7,240	· 생태하천 복원(호안, 보 및 교량정비)
2021년	6,600	· 생태하천 복원(호안, 보, 교량 및 생태습지 조성)
2022년	1,600	· 생태하천 복원(생태습지 및 여울)
2023년	360	· 생태하천 복원(수변 생태림 조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5.

○ 제안이유

- 농업용수가 부족한 서삼면 장산리 지역의 수원공(장산제, 임곡제)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시설계 후 시행계획 승인(전라남도)시 총사업비가 변경 승인됨에 따라 변경된 총사업비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당초 : 9,670백만원(군비)/지방전환사업(균특 6,769^{70%}, 군비 2,901^{30%})
- 변경 : 9,722백만원(군비)/지방전환사업(균특 6,806^{70%}, 군비 2,916^{30%})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당초	변경	증△감	
계	9,670	9,722	52	
2020년	1,000	1,000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21년	3,000	4,000	1,000	• 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 축조 등
2022년	3,000	3,000	-	• 우회도로 및 저수지 제방 축조 등
2023년	2,000	1,722	△278	• 저수지 축조 및 부대시설 정비 등
2024년	670	-	△670	• 저수지 축조 및 부대시설 정비 등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변경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도시재생과장)

○ 제출일자 : 2022. 11. 15.

○ 제안이유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은 호남선 철도로 장성읍이 동서로 나누어져 지역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철도 횡단 교통시설인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사업추진 중 장성읍 호남선 철도 지상 구간의 지중화 및 이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된 사항으로 호남선 철도개량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 사업기간을 2020년~2022년에서 2020년~2027년까지로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31,000백만원 【재원 - 군비 100%】
- 계속사업비 : 31,000백만원 【재원 - 군비 100%】
- 사업기간 : 당초 2020년~2022년 / 변경 : 2020년~2027년

기간	사업비 (백만원)	내용
계	31,000	
2020년	3,00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년	11,123	• 행정절차이행, 토지보상, 사업 착공
2022년	-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2023년	-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2024년	6,877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2025년	4,000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2026년	4,000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2027년	2,000	• 지하차도2차로 개설(L=0.63km)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정수장 장비) 계속비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제출일자 : 2022. 11. 15.

○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은 정수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 2021년 현황조사 및 공모신청 과정을 통해 202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당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 41,200백만원(재원 - 군특 50% + 군비 50%)
- 계속사업비 : 41,200백만원(군특 20,600, 군비 20,600)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41,200	
2022년	1,20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2022.11~)
2023년	14,00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행정 협의
2024년	13,000	• 정수장 신설(Q=7,500 m ³ /일)
2025년	13,000	• 배수지(V=3,800m ³), 도수·송수관로(L=6.4km)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8. 2023년도 예산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1. 17.
- 주요내용

1. 세 입 : 527,246,000천원

- 가. 삭 감 : 해당없음
- 나. 증 액 : 해당없음
-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27,246,621	-	-	-	527,246,621
일반회계	518,310,735	-	-	-	518,310,735
특별회계	8,935,886	-	-	-	8,935,886

-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527,246,621천원

- 가. 삭 감
 - 1) 일반회계 : 1,520,000천원
 -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1,520,0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인정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527,246,621	1,520,000	1,520,000	-	527,246,621	
일반회계	518,310,735	1,520,000	1,520,000	-	518,310,735	
특별회계	8,935,886	-	-	-	8,935,886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계	5건	6,320,000	1,520,000	4,800,000	
401-01	장성호 적송숲 수변길 쉼터 조성사업	100,000	100,000	0	
401-01	장성호 야간 안전시설 보강 공사	500,000	200,000	300,000	
307-03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운영비	20,000	20,000	0	
402-02	신소득 패션프루트 단지 조성(세입포함)	200,000	200,000	0	
401-01	장성 배수 펌프장펌프 용량 증설사업	5,500,000	1,000,000	4,500,000	
				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	일반 예비비	0	1,520,000	1,520,00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	예비비	0	0	0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11. 17.

○ 주요내용

1. 수 입 : 24,452,652천원

○ 삭감액 : 없음

2. 지 출 : 24,452,652천원

○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3.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4,452,652	0	0	0	0	24,452,65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4,181,270	0	0	0	0	14,181,270
재난관리기금	2,404,218	0	0	0	0	2,404,218
체육진흥기금	2,823,288	0	0	0	0	2,823,288
사회복지기금	3,465,086	0	0	0	0	3,465,086
폐기물주민지원	1,496,789	0	0	0	0	1,496,789
식품진흥기금	82,001	0	0	0	0	82,001

4. 증 액 : 없음

- 증액 조서 : 해당 없음
- 감액 조서 : 해당 없음

5. 예치금 : 23,925,913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